

##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
	연락처	전화	휴대전화 전자우편
신청 내용	① 연결 목적		
	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		
	연결 신청 장소		
	③ 사업부지 장소		
	사업부지 면적 (건축면적, 법정주차대수 등)		

「도로법」 제52조, 제61조 및 「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2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도로관리청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.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	수수료 : 없음
유의사항	1.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. 2.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
작성방법	①란은 휴게소·주유소·공장·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.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.(예: 국도 ○○호선 등)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.	

### 처리절차

